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 산 검 사 의 견 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및특별회계)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

목 차

□ 결산검사의견서	3
I. 결산검사개요	5
II. 일반회계 결산	6
1. 세 입 결 산	6
2. 세 출 결 산	9
III. 특별회계 결산	12
1. 세 입 결 산	12
2. 세 출 결 산	13
IV. 개선을 요하는 사항	14

결 산 검 사 의 견 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로부터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에 따라 200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로서 1년동안 세입과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의 행·재정적 실적보고서이기도 하므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서대로 성실하게 집행되고 집행내용도 제반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 수혜자인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지방자치 본래적 목적달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리 증진을 기하여야 하겠으나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열악한 재정적 현실을 감안하여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00회계년도 예산규모로 볼때 99년도 151,319백만원보다 108%(12,038백만원) 늘어난 163,357백만원으로 이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인만큼 재정여건이 개선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숨은 세원발굴, 경영수익사업개발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수납액 153,217백만원은 예산액의 101.5%로 2,259백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 수납액은 예산액의 104.0%인 32,584백만원으로 이것은 세입금 부과·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나 체납세가 10,912백만원으로 과다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며, 징수불능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대비 60%에 불과한 555백만원으로 그 실적이 부진하며,

- 4 -

- 세출예산의 고질적 문제인 명시·사고이월비가 99년도 27,536백만원 보다 2,879백만원 줄어든 24,657백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세출예산 불용액은 전년보다 645백만원이 늘어난 8,740백만원으로 예산의 사장이나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임.
- 기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작성한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따로 붙임 감사의견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변동내용과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2001년 6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감사위원

대표위원	이 경 식	
위 원	최 상 호	
위 원	노 경 규	
위 원	배 한 용	

I. 결산검사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결산검사 항목

- 결산총괄 설명서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및이체조서, 계속비집행, 예비비집행, 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 채무부담행위)
- 기금결산보고서
- 채권현재액보고서
- 채무결산보고서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결산검사의 범위

- 세입·세출의 결산
-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II. 일반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가. 세입의 결산총괄

○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합 계	140,385	150,958	152,974	164,129	142,124	153,217	10,850	10,912
지 방 세	26,661	31,328	34,992	39,413	27,865	32,584	7,127	6,829
세 외 수 입	56,415	46,519	60,826	50,966	57,103	46,883	3,723	4,083
재 정보 전 금		5,975		6,379		6,379		
지 방 교 부 세	12,697	18,820	12,704	18,820	12,704	18,820		
지 방 양 여 금	5,295	8,145	5,295	8,145	5,295	8,145		
보 조 금	39,017	37,927	39,007	37,862	39,007	37,862		
지 방 채	300	2,244	150	2,544	150	2,544		

○ 세입결산총괄 감사의견

- 2000년 세입금 수납액 153,217백만원은 예산액의 101.5%로 2,259백만원 초과달성임.
- 일반회계 수납액 중 지방세수입의 수납액은 예산액의 104.0%로 세입액 징수확보에 노력한 결과이며,
 - 전년대비 지방세 수납액도 4,719백만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부과, 징수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 시세징수금교부 수입·재정보전금수입의 증가 및 지방양여금과 지방채 증가로 인한 순 수납액의 증가로 인한 초과달성임.

다. 세외수입 부문

○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금	액	56,415	46,519 (52,493)	60,826	50,966 (57,345)	57,103	46,883 (53,252)	3,723	4,083 (4,083)

※ () 內 수치는 시세징수교부금 중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수치임.

-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월금액)이 7,145백만원 감소함에 기인하며,
 - 시세징수교부금수입 중 전년도 징수교부율은 30%였으나,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배정된 재정보전금항목 27%인 6,379백만원을 세외수입수납액에 포함하면 사실상의 시세징수금 실제수입은 전년대비 843백만원이 증가함.
- 재활용품 선별장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인해 2000년부터 수거판매수입은 없음.

○ 과태료수입 징수결정의 감소사유

(단위 : 백만원)

회계년도	징수결정액	비 고
1999	1,639	
2000	1,448	
증감	△191	

- 종전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병행하던것이 청소년보호법개정('99.7.1)으로 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시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분(과징금부과)을 하지 않으므로 감소.
- 건설기계 과태료도 최고조정금액이 하향됨.
(50만원 → 30만원으로)

- 2000세입 증가의 주요원인을 분석하여 볼 때
 - 미수납액이 10,91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0.5%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미수납액의 전년대비 95.8%로(△300백만원) 감소하였는 바 이는 부과, 징수 세입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미수납액이 10,912백만원으로 계속 거액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고지단계에서부터 미수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납기내 징수실적의 제고 등 미수납액을 발생 단계부터 억제해야 하며, 부단한 미수납액 축소 노력이 필요함.

나. 세입부문별 감사의견

○ 지방세 부과부분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2000년 과징실적이 266건, 3,736백만원의 추정실적('99년대비 185.9%증가)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원발굴노력에 의한 세수확보에 진력해야 할 것임.

○ 지방세 징수부분

• 과오납금의 처리

- 매년 반복 지적함과 같이 이중부과 및 이중수납으로 인한 과오납반환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민원야기 사항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는 바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시 익월에 또 체납액고지서를 발부함으로 인한 이중수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고지발부 및 소인 지연으로 인한 체납고지서 발송 축소 등에 노력이 필요함.

•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 2000년 결손처분액이 555,575천원으로 전년대비 60.0%에 불과한 것은 적극적인 체납처분 노력의 부족으로 보이며,
- 반복지적함과 같이 지방세 결손 중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330,241천원으로 결손처분액의 59.4%에 달하고 있음은 시효소멸기간까지 납부독촉, 수색, 재산조사, 체납처분 등 제반 체납액 축소 노력을 해태하고, 징수권 소멸시효를 기다리다가 시효 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또한 부동산실명법 관련 과태료 및 약사법 관련 과태료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 기인함.

2. 세출의 결산

가. 요약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금	예비비사용	예산이용
2000년	122,878	28,080	1,374	0
1999년	105,126	35,259	944	0
1998년	105,478	38,598	2,124	0
예산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39	150,958	107,293	35,931	7,734
229	140,385	104,971	28,080	7,334
18	144,076	100,299	35,259	8,518

나. 세출결산총괄 감사의견

- 당초예산액 101,531백만원에서 2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으로 121% 늘어난 최종 예산액은 122,878백만원으로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8,080백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50,958백만원임.
- 세출예산전용액은 39백만원으로서 토지(임야)대장부책 및 카드 CD-ROM화 사업에 따른 수수료 30백만원과 인부임 9백만원을 일반운영비 목에서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와 재료비 목으로 각각 전용하였는 바 이는 예산의 탄력적운용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예산편성시 과목구분착오분을 정정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 재해대책등 예기치 못한 지출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예산액의 4.0%를 차지하는 4,938백만원이며, 그 중에 1,263백만원이 구제역방역 및 수해복구 등에 사용되었으나, 3,556백만원은 불용처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비비예산의 과다편성 및 예산의 사장으로 여겨짐.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에 해당하는 107,293백만원을 집행하여 예산과 결산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보수사업 등 53건 18,357백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문화재 안내관정비사업 등 49건 6,183백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농수산물물류센터건립비 11,390백만원 등 총 102건 35,930백만원으로서 명시·사고이월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보상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기인함.
- 불용액은 예산액의 5.1%에 해당되는 7,734백만원이었으며, 불용액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가 85.7%를 차지하고 있음.

다. 부문별 결산검사의견

-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은 한해동안 군정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계획서로서 군민이 낸 세금을 적재적소, 적기에 투입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지역적 특성과 행정수요, 주민요구사항, 자금소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 책임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만큼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할 것인 바

2000년도 예산현액 대 지출액은 71%로서 99년도의 74%보다 더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을 보면 자본지출의 집행실적이 61%로 특히 저조하며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이 59%로 이는 당해년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한 각종 사업비를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한테 기인한 것이므로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지구선정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

특히 명시이월 53건 18,357백만원 중 군민독서실 건립비 등 6건 2,147백만원은 2000. 12. 20에 승인된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회계년도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예견됨에도 2001년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고, 당해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명시이월시킨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됨.

또한 1999회계년도 명시이월비가 사고이월비로 재 이월된 경우가 3,037백만원으로 이는 재원의 조달가능성 및 사업의 예상소요기간등을 잘못 판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관광안내판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는데 집행하였고,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가 다소 있었음.

○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서재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사업비 42백만원과 응암2리 진입로 수해복구사업비 31백만원을 예비비로 시행하면서 2000년 10월 4일에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조치한 바 이는 신속한 수해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여겨짐.

○ 수해복구사업추진에 있어

논공읍 남리 용호천 수해복구공사를 415백만원에 도급공사를 시행하면서 축제공사에 편입되는 57필지중 3필지를 지주로부터 일시사용 승인 거부함으로써 일부 축제공간이 홍수위를 막을 수 없는 시공이 되어 수해복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공이 되었고, 예산 또한 145백만원을 감액 정산 처리하여 불용상태에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해 몽리구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대로 형질변경을 시행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해복구공사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이 좋을 것으로 봄.

Ⅲ. 특별회계의 결산

1. 세입의 결산

가.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합 계	10,934	12,399	11,454	12,237	11,451	12,235	3	2
주택사업	107	123	105	116	105	116		
의료보호기금	6,064	6,433	6,068	6,437	6,065	6,435	3	2
새마을소득	447	373	427	373	427	373		
농공지구	484	673	690	633	690	633		
치수사업	3,832	4,797	4,164	4,678	4,164	4,678		

나. 감사의견

- 수납액 12,235백만원은 예산액의 98.6%로 164백만원 과소수납하였으며, 이는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중 내부전입금이 예산액대비 118백만원 과소수납됨에 기인하는 바, 당초 내부전입금은 확정된 수치로 예산편성시 즉 1, 2차추경시 예산현액에 반영하여 징수결정액과 순수납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정확한 세입의 분석이 가능함에도 세입예산현액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임.
- 특별회계 주 수입원인 치수사업 즉 골재매각수입은 456백만원 초과 판매하였으며, 이는 양호한 입지선정 및 점차적인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골재수입의 증가로 인함.

2. 세출의 결산

가.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합 계	10,934	12,399	9,900	11,276	272	117	762	1,006
주택사업	107	123	20	28			87	95
의료보호기금	6,064	6,433	6,063	6,432			1	1
새마을소득	447	373	347	320			100	53
농공지구	484	673	107	244			377	429
치수사업	3,832	4,797	3,363	4,252	272	117	197	428

○ 감사의견

- 주택사업과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각각 64%와 7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반복적인 현상으로 예산편성시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예산, 시설비예산액은 96백만원인데 지출액은 98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2백만원을 해당과목의 예산에 계상치 않고 결과적으로 다른 과목의 예산을 무단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음.

IV. 개선을 요하는 사항

1. 체납고지서 발부에 의한 이중납부분 축소

<현 황>

과오납반환금의 40%이상이 이중수납에 의한 것이며, 이 중 대부분이 정기분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이중발부함으로 인해 발생함.

<개 선 안>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만 발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달성군에서는 ①정기분고지서도 납세자가 요구하면 재발급하고 ②체납자에게는 정기분고지서와 동일한 체납고지서를 또 발부함으로 인해 이중납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정기분고지서에 납기후 금액도 표시되어 있음으로 독촉장만 발부하고 동일양식의 체납고지서는 발부하지 않는 업무개선이 필요함.